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11144호, '11.12.31공포, '12. 7. 1 시행),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09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54호, '12. 8. 17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보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 변경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수정함.

나.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부모 및 공익대표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원장 등의 참여비율을 낮춤.(안 제5조제2항)

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반환명령 항목을 변경된 법과 지침을 반영하여 정비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라. 제5장 보칙을 제8장으로 하여 수정하고, 제5장부터 제7장까지를 신설하며, 기존 「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를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등 구미시 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육”이라 함은”을 ““보육”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이라 함은”을 ““어린이집”이란”으로, “시설”을 각각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보호자”라 함은”을 ““보호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을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으로, “상담”을 “상담,”로,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들”을 “직원을”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15인”을 “1명을 포함한 15명”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하거나”를 “인정하거나”로, “회의

소집”을 “회의소집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심의하는 안전이나 안전의 당사자가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위원은 심의를 회피할 수 있고, 안전 당사자는 관련 위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지원”을 “비용의 보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비용의 지원 및 보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육·연수 비용
3. 시설운영관리비 및 교재교구비
4. 보육아동 급·간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5조의 제목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을 “(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6조의 제목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을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장의 제목 “보칙”을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보육종사자의 재교육 등)”을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지역별 어린이집 분포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농촌지역,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영유아 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한다.

제18조의 제목 “(준용)”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재위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령,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복무)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령,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에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인사) ①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대표자는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원장이나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운영실태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22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①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야 한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장(제25조 및 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25조(지도와 명령)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결과 시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시정이나 처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보육교직원의 교육 등) 시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 시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지원을 할 수 있고,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재무·회계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미시영유아보육조례	구미시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비용 지원 등 구미시 보육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교직원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	제2조(정의) ----- ----- 뜻은 -----.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 ----- ----- ----- -----. 3. “어린이집”이란 -----

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 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 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 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 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보호자와 더 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 게 보육하여야 하며 제7조에 의 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보육정책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	----- ---- 기관-----. 4. “보호자”란 ----- ----- ----- -----.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 집----- ----- 상담, -- ----- 어린이집----- ----- --- 어린이집의 원장 ----- ----- 직원을 ----- -. 제3조(책무) 구미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 ----- ----- ----- -----.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
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1
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보육 전
문가

2.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
사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구미시의회의원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
는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

----- 1명
을 포함한 15명 -----

- 구성하되 성평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
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
의 45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위원의 10
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
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
의 100분의 10 이하

<삭 제>

③-----

-----.

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생략)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생략)

②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생략)

<신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④ (현행과 같음)

⑤----- 1명-----

-----.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연 1회 -----

----- 인정하거나 -----
----- 회의소집을 -----
-----.

③ (현행과 같음)

④심의하는 안건이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위원은 심의를 회피할 수 있고, 안전 당사자는 관련 위원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u>보육시설</u> 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2. <u>어린이집</u> -----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u>기타</u>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u>그 밖에</u> ----- ----- -----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안</u>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위원의 수당) ----- ----- ----- <u>범위</u> ----- ----- . ----- ----- ----- ----- .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 (생략)	제10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보육정보센터에는 <u>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u>	②----- <u>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u>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u>각호</u> 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1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 ----- <u>각 호</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육시설 종사자 상담 및 구
인·구직 정보 제공
5.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
내·상담 및 교육
- 6.·7. (생략)
8.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지원

제14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시
장은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
정에 의거 설치인가를 받은 보
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
·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3. 시설운영관리비 및 교재교구
비
4. 보육아동 급·간식비

4. 보육교직원 -----

5. 어린이집 -----

- 6.·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

제4장 비용의 보조

제14조(비용의 지원 및 보조)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
른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보육
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
보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 설>

제15조(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원
이 필요할 경우 지원기준을 정
하고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
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
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
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및 교육·
연수 비용
3. 시설운영관리비 및 교재교구
비
4. 보육아동 급·간식비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
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
용

제15조(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① 시장은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
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
수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
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를 받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
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
을 위반 하였을 때

2. · 3. (생략)

<신 설>

제5장 보칙

제17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 등)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에 비용을 반환할 자가 기한 내
에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제16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
령) -----
-----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
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장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시장은 보육종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신 설>

① 시립어린이집은 보육수요와 지역별 어린이집 분포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저소득층 밀집 지역 및 농촌지역,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상시 영유아 1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영유아 보육법상의 설치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시립어린이집의 설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인가절차 없이 직접 설치한다.

제18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어야 하며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운영,

<신 설>

재위탁, 취소, 해지 등에 관한 심의는 구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행한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며,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다만,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령,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복무)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법령,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20조(인사) ① 시립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한 보육교직원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

<신 설>

<신 설>

장은 해당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③ 위탁운영하는 경우 대표자는
보육교직원 임면 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시립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정기적
으로 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
며, 원장이나 수탁자는 이에 응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운영실태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
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결
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건강·영양 및 안전

제22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3조(급식관리) 어린이집 원장

은 영유아에게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안전관리) ① 어린이집 원

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고,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실내·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영유아를 보호 감독해야 하며 원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

<신 설>

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장 지도 및 감독

제25조(지도와 명령) 시장은 보육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
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26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
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
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
게 할 수 있다.

② 지도·점검결과 시정·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
드시 문서로써 시정이나 처분하
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장 보칙

제27조(보육교직원의 교육 등) 시
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
인 교육 등을 실시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평가) 시장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특별 지원을 할 수 있고,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제29조(준용)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 재무·회계규칙 등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과 보건복지부, 경상북도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0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19, 2011.6.7>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

제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보육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

③ 삭제 <2011.8.4>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기능,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전문개정 2007.10.17]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목개정 2011.6.7]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에게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전문개정 2007.10.17]

제34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소득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2.19>

[전문개정 2007.10.17]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보육정보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6.7, 2011.8.4, 2011.12.31>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삭제 <2011.8.4>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0.17]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전문개정 2007.10.17]

제42조(보고와 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17]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

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3.15, 2012.6.29>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0.3.15, 2011.12.8>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6.29>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전문개정 2009.6.30]

제10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6.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전의 당사자이거나 안전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전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전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각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6.30]

제13조(보육정보센터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보센터와 지방보육정보센터(이하 "각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12.8>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教具)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脆弱保育)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 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앙보육정보센터는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6.30]

제24조(비용의 보조) ①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12.2.3>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지방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0.3.15>
[전문개정 2009.6.30]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조(보육정보센터의 직원)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에는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1.1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신설 2010.7.9, 2012.8.3>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7.9, 2011.12.8>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19, 2010.7.9, 2011.12.8>

[전문개정 2009.7.3]

[제목개정 2011.12.8]

제33조(건강진단)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건강진단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12.8>

② 영유아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신체계측, 시력검사, 구강검사 등 영유아 발달단계에 따라 필요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 항목에는 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8>

④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⑤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를 어린이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보육교직원을 즉시 휴직시키거나 면직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전문개정 2009.7.3]